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 의 안 건

1.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4.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의 건
6.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7.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9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갖춘 행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추진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인공지능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 AI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영향 인공지능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 의사 결정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검토·확인 절차 등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6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AI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성과 평가, 의회 보고 등 정책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7조 정책 자문단 관련하여, AI 정책은 기술적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인 자문체계 구축이 정책

추진의 핵심 요소이므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 보다는 “설치·운영한다”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8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¹⁾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5년간 총 1억9천만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특히 1차년도 AI 전환 컨설팅은 금산군 특화 산업인 인삼 산업, 고령인구 및 복지 분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 이후, 매년 2,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산업협력·경진대회·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도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 「전자정부법」 제4조와 「인공지능 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AI 활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AI 기술 및 도구를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 아래의 AI 관련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의 주요 특징은 참고바람.

< 참고 >

구 분	주요 특징	특기사항	금산군 비교
서울특별시	AI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고영향 AI 별도 심의 절차 규정	자문단 권한 보강 검토 필요
충청남도	AI 영향평가 도입	도입 전 영향평가 의무화	영향평가 규정 미비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 취약계층 명시 규정	정보격차 해소 사업 별도 규정	취약계층 보호 조항 추가 필요
경기도	이행실적 의회 보고 의무화	연 1회 의회 보고 조항 필요	의회 보고 조항 신설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부.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0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남준수 기획전략국장

○ 검토보고 : 이금성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인구 감소 및 유출을 극복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종 지원시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총칙

-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6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 및 발급 (안 제8조 ~ 9조)
- 금산군 생활군민에 대한 혜택 (안 제10조 ~ 11조)
- 생활군민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안 제12조)

○ 보칙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안 제13조 ~ 14조)
-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여에 대한 포상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 금산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법 제15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 기존의 「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범 체계상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등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별도 조례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비용추계 및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 5년간 4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구축비 3억원 및 유지보수 8천만원, 인센티브 5천만원으로 추계 되었음.
- 1차년도 재원 3억1천만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나, 3차에서 5차년도까지의 재원 9천만원은 군비 부담이므로, 기금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생활군민 인센티브를 1,000명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 등록 규모 확대 시 소요 예산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한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 본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생활군민”에게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공공시설은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금산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조례」 등 별도의 개별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 본 조례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각 개별 시설 조례의 감면 대상에 “생활군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충돌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활군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본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두어 관련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9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1. 23.(2026. 2. 4. 보류)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3. 17.
-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태진 안전건설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 토지 : 군북면 상곡리 127-1 등 49필지, 70,380㎡
 - 건물 : 군북면 상곡리 134 등 85동, 12,444㎡

○ 처분재산

- 건물 : 군북면 상곡리 134 등 23동, 2,132㎡

다. 변경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97	162,232	23,652	116	176,782	24,906	19	14,550	1,254	
		건물	47	25,472	73,199	101	35,089	94,906	54	9,617	21,707	
	매입	토지	97	162,232	23,652	116	176,782	24,906	19	14,550	1,254	
		건물	47	25,472	73,199	101	35,089	94,906	54	9,617	21,707	
처 분	계	토지										
		건물	10	1,613	363	33	3,745	2,192	23	2,132	1,829	
	멸실	토지										
		건물	10	1,613	363	33	3,745	2,192	23	2,132	1,8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14,366백만원에서 24,790백만원이 증액된 39,15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49필지(70,380㎡) 매입과 주택 신축 64동(25평형), 커뮤니티센터 1동 신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지난 제334회 임시회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계획, 입주자 확보 방안 등을 청취 후 심의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시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운영계획 보고가 있었음.
- 본 변경안에 따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은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80세대 규모이며, 보건소장의 운영계획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변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30년까지 금산군이 계획한 205세대 규모로 확대 여부는 추후 본 변경안에 따른 조성과 운영 후 그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0차 변경안 1부.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8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일 : 2026. 3. 5.
-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 다. 회 부 일 : 2026. 3. 17.
-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태진 안전건설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 토지 :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82번지 외 2필지 / 2,019㎡

○ 처분재산

- 해당 없음

다. 변경내역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3	2,019	2,000	3	2,019	2,000	
		건물	1	940	8,948	1	940	8,948				
	매입	토지				3	2,019	2,000	3	2,019	2,000	
		건물	1	940	8,948	1	940	8,948				
처 분	계	토지										
		건물	1	568	152	1	568	152				
	멸실	토지										
		건물	1	568	152	1	568	15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목길 주·정차 문제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결하고자 토지 3필지, 2,019m²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지역은 유동인구와 골목길 주·정차가 많은 곳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임.
- 그러나, 취득예정 토지 중 2필지의 예정가격은 가감정에 의한 산출이라고 하나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의 각각 4.8배, 4.6배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 합리적인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와 공사비 산출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2026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부.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서

의안 번호	제24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의견 없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3.3.) 및 시행(' 24.3.)에 따라,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공간 이용을 개선하고 기능·역할 중심의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계획 수립 필요
- 금산군 전반에 걸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정주여건 저하, 생활 서비스 접근성 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 설정 필요

- 주거·산업·환경·생활서비스 등 농촌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간 기능 재편 및 유형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개별 사업 추진 및 관련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 공간적 범위 : 금산군 일원(1읍·9면, 577.21km²)
 -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개요, 금산군 현황 및 여건분석, 금산군 농촌공간 기본구상, 부문계획,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계획,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맞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그러나, 각각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 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토피치유마을 활성화’,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농촌다움 등’ 금산군이 현재 실행 또는 계획중인 사업의 그룹화와 농촌지역 어느 곳이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아쉬움이 있음.
- 또한, 장기적 성공사례가 별로 없는 ‘6차 산업화’ 등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후 관련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는 유리할지라도 사업 선정 후 실제 사업 추진 시 그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전국적 성공사례가 적은 시책에 대하여는 보완대책 제시와 일반적인 기본계획보다 우리군 맞춤형 기본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 없음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안) 1부.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3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옥외영업장 영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1일당 8시간 이내인 24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하고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 제조 가능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를 약 6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2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 부과 사항 삭제(안 제23조제3항)

-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부과 사항 삭제

○ 법령 인용 표기 정비 및 법률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23조제4항, 제3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표기 정정과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시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 별첨 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7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박병훈의원 등 3인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박병훈 의원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 반영 폐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군민들 또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산군 차원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원 금액·지급 시기·지급 방식 등 핵심 사항 전반을 군수의 재량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지방 자치법상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과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급 시기와 규모를 행정 권한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민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안 입법의 성격을 가짐.
- 우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생지원이 선거 일정과 연계된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 상한은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산군이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군 부담 추정액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임.
- 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과정에서 해당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수의 단독 판단에 따른 집행은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 민생지원은 그 필요성만큼이나 집행의 절차와 구조 또한 중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일회성·재량 중심의 행정이라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생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제 1조, 제2조)
-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안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신청 및 결정(안 제10조)
- 지급 제외 및 환수(안 제11조, 제12조)
- 통지 및 이의신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차이점으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1인당 지급금액을 연간 50만원 이내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지원계획과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로 금산군수가 제

출한 조례안의 시행일인 ‘공포한 날부터’ 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 동일 취지의 금산군수 제출 조례안이 함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 여부, 각각 조례안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비교하는 실질적인 심사와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 반영 폐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21호
----------	------

2026. 3. 18.(수)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일 : 2026. 3. 5.

나. 제 안 자 : 금산군수

다. 회 부 일 : 2026. 3. 17.

라. 상 정 일 : 2026. 3. 17.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김창식 산업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주현 전문위원

○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 반영 폐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결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민생안정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약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그러나 금산군은 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이라는 상황속에서 긴급한 지역의 경제 위기 없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유사하게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에서 군민 외에도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군민과 동등하게 지급대상자로 명시하고 있고,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9,480만원(결혼이민자 246명, 영주권자 70명 / 2026년 2월말 기준)이 소요됨. 이에 실제 생활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 반영 폐기)
(참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없음

별첨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